

## 2018년 제9회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부산광역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8년 10월 22일

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

### 1.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9022호, 2018.7.3.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, 2018.5.10.)
-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(부산광역시 규칙 제3944호, 2018.2.7.)

### 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근무부서	임용등급	인원	비고
영상뉴스 제작·작가	공감시정담당관	행정6급	1명	
영어영상PD	공감시정담당관	행정8급	1명	
사진촬영 및 제작	공보담당관	행정8급	1명	

※ 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, 5년 이내 연장 가능 (사업 계속 시)

### 3. 임용분야 주요업무

임용분야	주요업무
영상뉴스 제작·작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영상뉴스 총괄 제작 관리(매일)</li><li>• 영상뉴스 원고 구성·작성</li><li>• 기타 시정 전반 정책 영상홍보</li></ul>

임용분야	주요업무
영어영상P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산시 온라인 바이럴 영상 기획, 제작</li> <li>• 市 공식 유튜브 운영전략 수립 및 추진</li> <li>•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(영어 등 다국어) 운영관리</li> <li>• 유튜브용 영어 영상물 제작</li> </ul>
사진촬영 및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정행사 사진 촬영 및 제작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사진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사진 전시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시정 사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## 4. 응시 자격

### 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
<p>&lt;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li> <li>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li> <li>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6의3.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ul> </li> <li>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 <p>&lt;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</li> <li>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</li> </ol> </li> <li>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공기관</li> <li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</li> <li>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</li> <li>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</li> </ol> </li> </o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나. 분야별 자격요건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 격 요 건
영상뉴스 제작·작가	행정6급 (일반 임기제)	<p><b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hr/> <p>▶<b>경력인정 범위</b>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,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업무(방송·영상 제작·기획, 뉴스원고 구성·작성 등)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 <p>▶<b>우대사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문방송학과, 광고홍보학과, 영화·영상콘텐츠학과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학위 취득자</li> <li>※ 명시되지 않은 관련학과는 학과장 증빙을 첨부하여 인정 가능</li> <li>- 방송·영상 관련 공모전 수상실적(한국방송협회, 방송통신위원회 등)</li> <li>- 광고·홍보 관련 카피라이터 실무 경력자</li> <li>- 실적 자료(포트폴리오) 제출 : 최근2년 이내 제작 영상물 2점 이내</li> </ul>
영어영상 PD	행정8급 (일반 임기제)	<p><b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hr/> <p>▶<b>경력인정 범위</b>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,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업무(온라인 바이럴 영상 기획·제작,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획·제작 등)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경력</p> <p>▶<b>우대사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        &lt;영어능력검정시험&gt;          TOEIC(775), TOEFL(PBT 560, CBT 220, IBT 83), TEPS(700), G-TELP(77 level 2), FLEX(700), OPIc(IM3)</li> <li>- 실적 자료(포트폴리오) 제출 : 최근2년 이내 제작 영상물 2점 이내</li> </ul>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 격 요 건
사진촬영 및 제작	행정8급 (일반 임기제)	<p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hr/> <p>▶경력인정 범위 : 정부 및 공공기관, 언론기관, 기업체, 연구소에서 사진촬영, 사진편집을 담당한 경력</p> <p>▶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교에서 사진학, 사진영상미디어, 사진미디어, 사진예술 등 사진관련 전공자(졸업자)</li> <li>- 언론사, 정부 및 공공기관, 사진관련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사진전 입상자</li> </ul>

## 5. 시험방법

###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  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 기준 : 업무연관성, 경력, 전공, 기타 업무능력 평가(세부내용 비공개)

### 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  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※ 5대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## 6. 보수 수준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비 고
6급(상당)	72,112천원	48,050천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채정 가능
8급(상당)	51,705천원	36,882천원	

## 7. 시험 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'18.10.22.(월)	'18.11. 2.(금) ~ 11. 6.(화)	서류전형	'18.11. 8.(목)	10층 회의실	'18.11. 9.(금)
		면접시험	'18.11.14.(수)~ 11.16.(금)	21층 회의실	'18.11.21.(수)

※ 면접시험일,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## 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처 :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(10층)

다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접수시간 :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접수

-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
(우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인사과 인재채용팀
-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와 「반신용 봉투」를 함께 우송  
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'등기용 우표 부착'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## 9. 제출서류

### 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제1호 서식>
- 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  - ▶ 응시수수료 : 6급(상당) 7,000원, 8급(상당) 5,000원
  - 부산광역시 수입증지(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) 날인
  -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'우체국 통상환증서'로 대체
- ③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  -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**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**
- ④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-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-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1부
  - ▶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  - ▶ 학과(학위)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(학위) 증명서 제출<별지 제7호 서식>
-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 - ▶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  - ▶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  -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 
(**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됨에 유의**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
  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원본) 1부
 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 -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"보험가입 전체기간" 발급
-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- ⑩ 증명사진 1매 : 3.5×4.5cm

## 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
  - ▶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.
- ②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
- ③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 
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
  - ▶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<자유서식>
  - ▶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
-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(A4 3매 이내)
- ⑤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1부 <별지 제7호 서식>
  - ▶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

## 다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
-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※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
-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

## 10. 기타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(<http://www.busan.go.kr>)의 [시험정보란](#)에 게시합니다.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(담당자 ☎ 051-888-1971)로 문의바랍니다.